

정부, 종돈장 위생관리 요령 제정 · 고시

◇...농림수산부는 지난 2월 8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돈장 위생관리요령을 제정 · 고시(농림수산부 고시 제1994-13호)했다.
종돈장 위생관리요령 전문은 다음과 같다<편집자 주>..... ◇

종돈장 위생관리요령
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돈과 종돈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종돈을 생산하고,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종돈장 소독 및 격리 등) ① 종돈장은 적절한 소독약제와 기구로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종돈장입구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출입하는 사람, 차량 및 기구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돈사의 출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

제3조(백신접종) ① 종돈에 사용하는 백신은 수의사와 상의 또는 지시하에 시술토록 하여야 하며, 종돈 개체별로 백신접종사항을 <별표1>의 양식에 의한 백신접종 대장을 기록,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돼지콜레라, 돼지단독, 돼지파보바이러스 감염증, 일본뇌염의 백신접종은 <별표2>의 백신접종 프로

그램을 참고하여 접종하여야 한다.

다만, 특정병원체부재농장(SPF 농장)은 예외로 한다.

③ 위축성비염, 흉막폐렴, 마이코플라스마폐렴, 파스튜렐라폐렴 등의 혼합백신은 분만 4주전에 1차 접종하고, 분만 2주전에 2차 접종하여야 한다.

④ 돼지전염병위장염, 로타바이러스설사증 및 대장균증 백신은 분만 5~7주전에 1차 접종하고 분만 2~3주전에 2차 접종하여야 한다.

제4조(내외부 기생충 구충 등) ① 내부 기생충은 적절한 약제로 정기적으로 구충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약제로 정기적으로 축체에 살포하여야 한다.

③ 돈사 내외에 쥐의 서식 및 출입이 없어야 하며, 구서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구충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의사와 상의 또는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5조(입식종돈의 질병검사) ① 외부로부터 종돈을 입식하고자 할 때에는 입식전 30일 이상 격리사육하면

서 제2항에서 규정한 질병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제3항에서 규정한 질병에 대한 실험실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하여 입식하여야 한다.

② 임상검사는 돼지콜레라, 전염성위장염, 돼지유행성설사, 오제스키병, 돼지단독, 위축성비염, 돼지생식호흡중후군, 마이코플라즈마페렴, 돼지적리, 음, 피부병 등을 대상으로 한다.

③ 실험실 검사대상질병과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부루셀라병 : 시험관내 응집반응

2. 오제스키병 : 혈청중화반응 또는 간이진단키트 검사(단,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에는 혈청중화시험으로 확인검사 실시)

④ 검사기관은 가축위생연구소, 가축위생시험소, 보건환경연구원 및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(이하 "검사기관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제6조(종돈장의 정기검사) ① 임상검사는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질병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종돈장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돼지중 5%의 돼지 또는 20두 이상의 돼지에 대하여 검사기관에서 연 2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돼지호흡기질병은 다음과 같으며, 검사성적을 1년간 기록, 보존하여야 한다.

1. 위축성비염 : 비갑개골 절단검사, 균분리검사(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때)

2. 마이코플라즈마페렴 : 기관지 및 폐 해부검사, 균분리검사(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때)

3. 흉막페렴 : 기관지 및 폐 해부검사, 균분리검사(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때)

4. 파스튜렐라페렴 : 기관지 및 폐 해부검사, 균분리검사(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때)

③ 종돈 및 후보종돈은 부루셀라병, 오제스키병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기관에서 혈청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며, 그 개체별 검사성적을 1년간 기록, 보존

하여야 한다.

제7조(확인) ① 가축위생시험소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3조 제1항, 제2항,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조 및 제6조중 호흡기질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종돈장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(확인)의 규정은 1994. 7. 1일부터 적용한다.

<별표1>

백신접종대장

<예방약>

백신구입상황		접종상황		접종	재고	비고
제조업소명	수량(두분)	제조번호(제조일자)	접종일자	수량(두분)	개체번호	(확인)

주 : 접종돼지번호 : 개체별 구분 기재(돈방, 돈군, 개체 등 확인가능토록 기재)

<별표2>

백신접종 프로그램

질병명	시 기 및 방 법	비 고
돼지콜레라	1차 : 생후 30~40일 2차 : 생후 50~60일 3차 : 매년 1회 보강접종	○ 포유전 면역 접종법인 경우는 제외
돼지단독	1차 : 생후 40~50일 2차 : 1차접종후 3~4개월후 3차 : 매년 1회 보강접종	
돼지 파보바이러스 감염증	1차 : 종부 4주전 2차 : 종부 2주전 3차 : 매년 1회 보강접종	후보종돈 및 미경산돈
돼지 일본뇌염	1차 : 매년 4~5월중 2차 : 1차접종후 2~3주후 3차 : 매년 4~5월에 1회 보강접종	후보종돈 및 미경산돈

※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기변경 가능함.